

## 충청북도사무의위임및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권한의 위임 및 위탁사항)”을 “(권한위임 및 위탁사항)”으로 하고

제4항 다음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도지사가 관장하는 지방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관리기관은 별표 5와 같다.

제5조의 제목 “(위임 및 책임의 표시)”를 “(위임처리 금지)”로 하고, “소속직 원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하거나”를 삭제한다.

제6조중 (준용) 다음에 “행정”을 삽입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을 앞뒤에 “ ”를 붙인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하고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접수된 민원이나 처리 중에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 신 구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p>제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사항) ①도 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군수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p> <p>⑤ (신 설)</p> <p>제5조(위임 및 책임의 표시) 시장· 군수, 증평출장소장, 충청북도의회 사무처장 및 소방서장은 미리 도지 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 에 규정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 임하여 전결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할 수 없다</p> <p>제6조(준용) 권한의 위임·위탁에 관 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중 관련규정을 준용한다</p>	<p>제2조(권한위임 및 위탁사항) ①도지사 가관 장하는 사무중----- ----- 별표1과 같다</p> <p>⑤도지사가 관장하는 지방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위임·위탁하는 관리기관 은 별표 5와 같다.</p> <p>제5조(위임처리 금지) 시장·군수, 증평 출장소장, 충청북도의회사무처장 및 소방서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 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할 수 없다</p> <p>제6조(준용)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하여----- 제외하고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중 관련규정을 준용한다</p>

(별 표 1)

권 한 위 임 사 무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행정관리담당관실	1	○현정원 범위내에서의 계조직권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현행
총무과	1	○출장소 소속공무원의 임용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현행
세정과	1	○도세 징수유예	지방세법 제41조	수정
	2	○도세 기한의 연장	동법 제26조의2	수정
	3	○도세 결손처분	동법 제30조의3	수정
	4	○도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	충청북도수입증지조례 제7조	현행
회계과	1	○은닉 도유재산 신고처리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제6조	수정
	2	○도유잡종재산 관리	동 조례 제3조	수정
	3	○도유폐천부지관리 및 매각	하천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현행
환경관리과	1	○호소특정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수질환경보전법 제36조	현행

분야별 번호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비 고
환경관리과	2	<p>○소음진동배출시설 규제에 대한 다음 사항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 사업장중 아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p> <p>가.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수리</p> <p>나. 배출시설 설치기간 연장신청의 수리</p> <p>다. 방지시설 설치의무 면제 인정</p> <p>라. 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p> <p>마. 공동방지시설 운영의 중단 또는 폐쇄신고 수리</p> <p>바. 가동개시의 신고 및 가동개시일 변경신고의 수리, 가동상태 점검</p> <p>사. 허가 또는 변경허가 부합여부 확인 및 조치명령</p> <p>아.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개입신고의 수리</p>	<p>소음·진동규제법 제9조</p> <p>동법시행령제2조 제4항</p> <p>동법 제10조</p> <p>소음진동규제법 제10조의2</p> <p>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2항</p> <p>동법 제13조제1항, 제4항</p> <p>소음·진동규제법 제13조제3항</p> <p>동법 제21조</p>	<p>현행</p> <p>현행</p> <p>현행</p> <p>현행</p> <p>현행</p> <p>현행</p> <p>현행</p> <p>현행</p>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비고
환경관리과	3	○토양정밀조사와 관련한 다음사항		현행
		가.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5 조제4항	현행
		나.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동법 제7조	현행
		다. 타인토지에의 출입 및 장애물의 변경 제거	동법 제8조	현행
		라. 손실보상	동법 제9조	현행
	마. 오염원인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동법 제15조	현행	
	4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련 다음사항		현행
		가.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신고 및 변 경신고 수리	동법 제11조	현행
		나.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 한 시정 등 조치명령 및 사용중지 명령	동법 제12조	현행
		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보고 및 자료제출 명령, 출입과 시설 및 비치자료의 검사	동법 제13조	현행
	5	○토양보전대책 지역과 관련한 다음 사항		현행
		가. 대책계획 수립 시행	동법 제18조제1항	현행
	나. 오염토양 개선사업 실시명령, 사 업 승인 및 변경승인, 사업실시	토양환경보전법 제 19조제1항, 제2항, 제3항	현행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비 고
환경관리과		다. 토지이용 및 시설의 설치제한	동법 제20조	현행
		라. 토양오염물질의 제거 및 시설의 철거명령	동법 제21조 제3항	현행
	6	○명령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동법 제24조	현행
	7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32조	현행
환경지도과	1	○소음진동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관한 다음사항 (대기 또는 수질분야 1~2종 사업장 제외 다만, 대기 1~2종사업장중 아 스콘제조시설 및 일반보일러 시설에 국한될 경우 위임범위에 포함됨)		(반복적 으로 규 정한 단 서규정 을 통합 규정)
		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점검	소음진동규제법 제 13조제4항	수정
		나. 개선명령	동법 제15조	수정
		다. 조업정지명령 등	동법 제16조	수정
		라. 시설의 이전명령 등	동법 제17조	수정
		마. 조업정지명령, 허가의 취소	동법 제18조	수정
		바.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전기· 수도의 설치 및 공급중단 요청	동법 제19조	수정
		사. 환경관리인 변경 명령	동법 제22조	현행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 점 검, 오염물질 채취, 감사의뢰 등	수질환경보전법시행 규칙 제24조제4항	신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환경지도과	3	○건설소음, 진동규제에 관한 다음사항		조문 분합 수정	
		가.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 지정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		
		나.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방음·방진 시설의 설치 등 조치명령	동법 제25조		수정
		다. 공사중지 등 조치명령	동법 제26조		분리
			라. 폭약사용자에 대한 규제조치 요청	동법 제27조	분리
	4	○교통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다음사항		조문 분 분리	
		가.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 지정	동법 제28조		
		나. 소음기 사용금지 등 조치요청	동법 제30조		분리
			다. 방음시설 설치 및 설치요청	동법 제31조	분리
	5	○생활소음·진동규제에 관한 다음사항		조문 분 분리	
		가. 생활소음·진동규제지역 지정	동법 제39조		
		나.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시 사용금지 또는 폐쇄 명령	동법 제40조		분리
			다. 이동 소음원의 사용금지, 사용시간 제한	동법 제41조	분리
	6	○운행차 점검에 관한 다음사항		합 침 수 정 (단서 삽 입)	
		가. 운행차 점검실시 (단, 도지사도 할 수 있다)	소음진동규제법 제37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비 고
환경지도과		나. 운행차 개선명령, 사용정지명령 및 개선결과 보고 수리	소음진동규제법 제 38조, 대기환경보전 법 제38조	현 행
	7	○보고 및 검사 등	소음진동규제법 제 51조	현 행
	8	○청문	동법 제54조	현 행
	9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61조	현 행
	10	○환경감시원의 임명	환경정책기본법 제 39조	현 행
	11	○생활악취의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 30조	현 행
	12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에 의하 여 생활악취 규제대상인자에 대한 보 고 및 검사 등	동법 제49조	신 설
	1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조사	동법 제8조의2	신 설
	14	○휘발성유기물질 배출자에 대한 조치 명령 등	동법 제28조의2제4 항	신 설
	15	○호소 특정시설의 개선, 사용중지 등 조치명령	수질환경보전법 제 37조	수 정
	16	○유독물감시원의 임명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 항	신 설
	17	○폐기물관리 관련 다음사항		현 행
		가.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변경허가	폐기물관리법 제26 조	현 행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비 고
환경지도과		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영업정지 명령	폐기물관리법 제28조	현행
		다. 과징금의 부과·징수	동법 제29조	현행
		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동법 제31조제3항	현행
		마.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32조	현행
		바. 휴업·폐업 등의 신고 수리	동법 제42조	현행
		사. 폐기물 재생처리신고 수리	동법 제44조의2	현행
		아. 청문	동법 제57조	현행
		자.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63조제3항	현행
보건행정과	1	○한약업사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약사법 제3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	현행
	2	○한약업사의 허가대장비치 및 허가증 교부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수정
	3	○한약업사 영업소 이전허가	동법시행규칙 제52조	현행
	4	○의약품 등 제조업자의 영업소 등록	동법시행규칙 제36조	수정
	5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 안마사의 자격증 반환, 회수, 환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 제17조, 안마사에관한규칙 제12조	현행
	6	○안마시술소의 청문 및 행정처분	안마사에관한규칙 제9조, 제10조	수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보건행정과	7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	안마에관한규칙 제8조	수정
	8	○향정신성의약품의 도매업자 또는 관리자 지정 및 지정사항 변경, 지정서교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8조, 제9조	2개항 통합
	9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의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수리	동법시행규칙 제23조	독립조항으로
	10	○향정신성의약품 취급허가,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업무의 정지	동법 제35조	독립조항으로
	11	○향정신성의약품 도매업자의 판매대상자 이외의 자에 대한 판매승인	동법 제18조	수정
	12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전보고의 수보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수정
	13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격 상실자의 소지약품 신고수리 및 양도의 승인	동법 제28조	수정
	14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에 대한 보고 명령, 검사 및 수거	동법 제33조	현행
	15	○향정신성의약품 폐기명령 및 명령불이행시 필요처분	동법 제34조	수정
	16	○향정신성의약품 감시원의 임명	동법 제36조	현행
	17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사용 승인	동법 제13조	규칙에서
	18	○마약취급자의 면허 및 면허사항의 변경	마약법 제7조	수정
	19	○마약취급자의 면허증교부와 등록	동법 제8조	수정
	20	○마약취급자 면허증 등의 재교부	동법시행규칙 제5조	수정
	21	○마약취급자의 등록말소	동법 제11조제1항	수정
	22	○의료기관 마약구입서 및 판매서교부	동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신설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비 고
보건행정과	23	○마약취급업무 폐지 등 신고의 수리	마약법 제10조제1항, 제2항	수 정
	24	○마약취급자에 대한 업무보고 명령	동법 제52조	수 정
	25	○마약취급자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등	동법 제53조	수 정
	26	○마약취급자의 사고보고의 수보	동법 제15조	수 정
	27	○마약취급 자격상실자의 소지마약 신고 수리 및 양도의 승인	동법 제16조	수 정
	28	○적출물 처리시설의 설치신고 수리 및 신고중 교부	적출물처리규칙 제7조	수 정
	29	○적출물 처리업자의 지정 및 지정서교부	동규칙 제4조	수 정
	30	○적출물 처리계획수립 및 처리실적 보고의 수보	동규칙 제8조	수 정
	31	○적출물 처리업자의 휴업·재개업·폐업·명의변경 등 신고의 수리	동규칙 제10조	수 정
	32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취소 등	동규칙 제13조	수 정
	33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자 지정 등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7조	수 정
	34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 지정의 취소	동규칙 제15조	현 행
	35	○의료기관 세탁물처리업소 보고명령 및 지도점검	동규칙 제18조	수 정
	36	○세탁물 처리업소 세탁물처리 실적보고의 수보	동규칙 제13조	신 설
37	○성병매개 우려자 인정	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	수 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보건행정과	38	○전염병에 대한 강제적 건강진단 명령	전염병예방법 제9조	현행
	39	○전염병예방법 제39조 각호의 1종 전염병 예방조치	동법 제39조	현행
	40	○제1종 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동법 제42조	현행
	41	○공·사립 의료기관을 제1종 전염병의 격리병상 또는 진료소 대응지정	동법 제25조	수정
	42	○소독업의 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동법 제40조의3	수정
	43	○소독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의 수리	동법 제40조의4	현행
	44	○소독업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동법 제40조의8	현행
	45	○예방접종 약품 등의 폐기처분 (용도변경 제외)	동법 제4조의2	규칙에서
	46	○사립의 결핵진료소, 요양소의 설치허가, 설치허가증의 교부 및 설치허가사항의 변경	결핵예방법 제3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4조, 제16조	수정
	47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신설
위생과	1	○조리사 면허증교부 및 재교부 (다만 면허증 최초 교부당시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는 제외)	식품위생법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46조 및 제47조	단서 수정
	2	○아·미용사 면허증교부 및 재교부 (다만 면허증 최초 교부당시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는 제외)	공중위생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20조	단서 수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위생과	3	○식품 등으로 인한 질병 또는 그에 기인하여 사망한 사체해부	식품위생법 제68조	수정
	4	○이·미용사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단, 면허취소는 면허증 최초교부당시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는 제외함)	공중위생법 제23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2제3항	단서 수정
	5	○조리사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다만 면허증 최초 교부당시 주소지가 타 시도인 경우는 제외)	식품위생법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48조	수정
수질관리과	1	○지하수와 관련한 다음 사항		현행
		가.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하수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의 조사 등	지하수법 제5조제2항 내지 제4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제3조, 제4조	현행
		나.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동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6조	현행
		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시정명령 및 조치 명령	동법 제8조제1항	현행
		라.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폐쇄명령 및 당사자 의견진술기회 부여	동법 제8조제2항, 제20조	현행
		마. 지하수개발·이용지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 철거명령 및 조치명령, 명령불이행에 대한 대집행	동법 제9조	현행
		바. 지하수 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동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현행
사. 지하수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오염방지 명령	동법 제1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현행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수질관리과		아. 지하수의 이용실태 조사 (단, 중앙행정기관에 보고는 제외)	지하수법 제1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현행
		자. 지하수 수질검사의 수리 및 시료 채취 후 시료봉인·인계	동법 제16조,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8조	현행
		차. 지하수개발 이용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명령, 출입검사	동법 제17조	현행
		카. 타인토지에의 출입허가, 일시사용 및 장애물제거 관련허가, 변경제거시 손실보상	동법 제18조, 제19조	현행
		타. 과태료 부과 징수, 의견진술기회 부여 및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17조	현행
	2	○먹는물 관리와 관련한 다음사항		현행
		가.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는 제외)	먹는물관리법 제5조 제2항	현행
	나. 먹는물 공동시설의 지정·관리 및 필요조치	동법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현행	
사회복지과	1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운용 및 시설업무의 지도·감독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수정
	2	○장애인복지시설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또는 폐지명령	장애인복지법 제42조	수정
	3	○장애인복지시설의 보고명령, 조사, 검사	동법 제41조	수정
	4	○사회복지법인 임원취임 승인, 감사 추천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제5항	수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사회복지과	5	○재해구호에 대한 다음사항 가. 수용시설의 제공(응급가설주택 포함) 나. 급식 또는 식품·의료·침구·학용품 기타 생활필수품의 급여 다. 의료 및 조산 라. 이재자의 구출 마.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바. 생업에 필요한 자금·기구 또는 자재의 급여나 대여 사. 생업알선 아. 장사	재해구호법 제5조	조문 분리 분리 분리 분리 분리 분리 분리 분리
가정복지과	1	○분묘에 대한 일제신고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수정
	2	○사설묘지·사설화장장·사설납골당 설치 허가(묘지구역이 2개 시군에 걸치는 묘지 제외)	동법 제8조	수정
	3	○묘지의 구역, 화장장·납골당의 시설변경허가 및 폐지허가	동법 제9조	수정
	4	○묘지 등 관리인 보고 및 변경보고	동법 제10조	수정
	5	○묘지 등 시설의 검사 및 보고명령	동법 제14조	수정
	6	○묘지 등 시설의 이전, 개수, 사용금지 명령 및 허가취소	동법 제15조	수정
	7	○무연고 분묘의 유골 집단안치	동법 제15조의2	수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비 고	
가정복지과	8	○분묘 등 이전명령에 따른 손실보상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 제15조의3	현 행	
	9	○묘지이외의 토지 등에 매장된 시체와 유골에 대한 개장명령과 개장허가	동법 제16조	수 정	
	10	○시체운반업의 허가	동법 제17조	수 정	
	11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에 관 하여 필요한 보고명령, 조사, 검사	노인복지법 제23조	수 정	
	12	○아동위원의 감독	아동복지법 제7조	수 정	
	13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동법 제15조	수 정	
	14	○아동의 후견인 선·해임 청구	동법 제16조	수 정	
	15	○재단법인의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다 음 사항		현 행	
		가. 시설의 설치인가	동법 제20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수 정	
		나. 시설의 폐지·휴지신고의 수리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수 정	
		다. 시설의 명칭·소재지·대표자 변경 신고의 수리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수 정	
	농 산 과	1	○비료판매업의 등록	비료관리법 제13조	현 행
		2	○사고비료의 양도 및 판매승인 신청수 리 처리	동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현 행
		3	○비료판매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동법 제14조제2항	수 정



분 야 별	일련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비 고
농 산 과	4	○비료판매업 등록의 제한	비료관리법 제15조	현 행
	5	○비료판매업 등록 및 취소, 휴업·폐업, 영업재개시 등의 고시	동법시행령 제7조	수 정
	6	○공동방제비용 부담 명령서 교부	식물방역법 제23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	현 행
	7	○비료판매업자의 휴업 및 폐업신고 수리	비료관리법 제13조	현 행
	8	○농약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농약판매업 등록 나. 농약판매업의 폐업·휴업, 영업재개 신고의 수리 다. 영업정지 명령 및 등록취소	농약관리법 제10조 제1항	현 행
			동법 제10조제2항	수 정
			동법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5	현 행
	9	○방제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가. 방제업의 등록 나. 방제업의 폐·휴업, 영업재개신고의 수리	동법 제11조	현 행
			동법 제11조 제2항	수 정
	10	○농약판매업자와 방제업자에 대한 보고 명령	동법 제20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수 정
11	○양곡판매업의 신고, 신고내용변경 및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처리 등 신고의 수리	양곡관리법 제18조 제1항	수 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농산과	12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곡매매업을 영위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징수	양곡관리법 제36조 제1항제1호	현행
	13	○양곡가공업의 등록	동법 제19조제1항	수정
	14	○양곡가공업 시설의 양도·임대·변경신고, 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신고의 수리	동법 제19조제3항,	수정
	15	○양곡가공업에 대한 영업의 정지, 등록의 취소	동법 제21조제1항	현행
	16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양곡가공업을 영위한 자 등에 대한 벌과금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33조 및 제36조	현행
	17	○감중가공업의 양도·임대신고 등의 수리	동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칙에서 수정
	18	○양곡매매업 신고의 수리(도매업·소매업 및 중개업)	동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규칙에서 수정
	19	○양곡매매업 신고내용변경 또는 영업의 폐지·휴업신고의 처리	동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3항	규칙에서 수정
	20	○양곡가공업의 등록	동법 제1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규칙에서 수정
	21	○양곡가공업시설의 양도·임대 또는 변경 및 영업의폐지 또는 휴업신고의 처리	동법 제1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22조	규칙에서 수정
	22	○양곡가공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동법 제21조제1항	규칙에서 수정
	23	○양곡가공업 시설의 변경사항 확인	동법시행령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	규칙에서 수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농지개량과	1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농어촌정비법 제20조	현행
	2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	동법 제21조	수정
	3	○농지개량계의 경비부과 인가	농지개량조합법 제88조제3항	신설
축산과	1	○부화업, 종축업, 축산업의 등록	축산법 제26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28조제1항	수정
	2	○부화업·종축업·축산업의 등록취소, 부화업의 영업정지	동법 제31조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30조	수정
	3	○부화업, 종축업 또는 축산업 등의 감독	동법 제32조	수정
	4	○부화업, 종축업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변경신고 수리	동법 제26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3항, 제25조4항	수정
	5	○축산업 등록의 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 수리	동법제27조제5항, 제6항,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6항, 제7항	수정
	6	○영업의 승계신고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수정
	7	○초과사육가축 감축명령, 초과사육 부과금 부과·징수	동법 제30조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15조	조문합침
	8	○동물병원의 개설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수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축산과	9	○비영리법인 동물병원의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수의사법 제17조제4항	분리 (8번에서)
	10	○동물병원의 휴업·폐업신고의 수리	동법 제18조	수정
	11	○보고명령 및 검사 등	동법 제31조	수정
	12	○공수의에 대한 업무위촉 및 지도감독	동법 제21조제1항, 제2항	수정
	13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6조	수정
	14	○가축의 격리와 이동제한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제8조	현행
	15	○가축집합시설의 사용정지 등	동법 제18조	수정
	16	○살처분 명령, 살처분 및 기타 필요한 조치	동법 제10조	수정
	17	○가축의 사체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의 발굴금지	동법 제15조	수정
	18	○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실시 명령 등	동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수정
	19	○축사 등의 소독명령	동법 제16조	수정
	20	○가축 집합시설에 대한 설비명령	동법 제7조	현행
	21	○동물용의약품 도매상허가 및 관리약사변경신고의 수리	약사법 제35조제2항,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10조	수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련 규정	비고
축 산 과	22	○어선의 등록,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 말소	어선법 제13조, 제17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4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2조, 제72조	현행
	23	○어선건조, 개조의 발주허가 및 취소, 발주허가내용통보, 건조·개조의 중지 및 어선·어선설비 제거 명령	동법 제8조, 제9조, 제10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현행
	24	○어선현장 확인업무	어선법 제11조	현행
	25	○청문에 관한 권한	동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7조	현행
	26	○내수면어업 면허, 기간연장허가 및 시설 제거명령, 수면관리자와의 협의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7조, 제10조, 제1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1조, 제27조, 제31조	현행
	27	○방치어선 관리, 처분과 내용공고, 제거명령 및 필요조치(대집행)	어선법 제35조, 동법시행령 제15조	현행
	28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53조, 동법시행령 제19조	현행
	산 립 과	1	○산림병해충의 구제·예방에 대한 조치 명령	산림법 제103조
2		○영림기술자 고용명령	동법 제10조제3항	수정

분야별 일련 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산림과	3	○천연보호림 등에 관한 다음사무 가. 관리인지정 및 필요한 사항의 명령 나. 천연보호림 등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신고의 수리 다. 천연보호림등의 지정 및 지정해제·통지 및 고시	산림법 제68조 동법 제62조, 제70조 동법 제67조, 제69조	현행 수정 수정 수정
	4	○중·요생산업의 등록	동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39조	수정
	5	○중·요생산업의 등록취소	동법 제48조	수정
	6	○보안림관리에 대한 다음사항 가. 보안림의 지정 나. 보안림의 해제 다. 보안림 예정지의 지정·해제의 통지 및 고시 등 라. 보안림 예정지에서의 행위금지 및 제한 마. 보안림의 지정 또는 해제의 고시와 통지 바. 보안림 예정지의 지정 또는 해제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 사. 보안림안에서의 제한행위에 대한 허가 및 신고의 수리 아. 조립 또는 복구명령	동법 제56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58조 동법 제59조 동법 제61조 동법 제60조 동법 제62조 동법 제65조	수정 현행 현행 현행 수정 현행 신설 수정 현행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비 고
산 림 과	자. 조림·육림·벌채 등 권장 및 시행	산림법 제66조의2	신 설
	7 ○조수보호구역의 설정에 대한 다음 사항		수 정
	가. 조수보호구 및 특별보호지구의 설정, 해제 및 고시	조수보호및수렵에관 한법률 제4조, 동법 시행령 제4조	수 정 (합 침)
	나. 조수보호구역안에서의 이용개발 등의 행위 및 이용·개발 등의 허가·인가·승인의 협의	동법시행령 제5조	수 정
	다. 손실보상	동법 제4조, 동법시 행령 제7조	현 행
	라. 특별보호지구안에서의 수목의 벌채 등의 허가 등	동법 제4조제4항, 동 법시행령 제6조	신 설
	8 ○조수보호원 자격 및 임명·해임에 대한 다음사항		수 정
	가. 조수보호원 임명 또는 해임	동법 제5조, 동법시 행규칙 제9조, 제13 조	수 정
	나. 명예조수보호원의 위촉 또는 해촉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3조	수 정
	다. 조수보호원증 및 명예조수보호원 증 발급 및 대장정리	동법시행규칙 제12 조	수 정
9 ○수입조수의 양도 등 신고수리	동법 제25조, 동법시 행규칙 제52조	신 설	
10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청원산림보호직원배 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신 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경제과	1	○도·소매업 진흥에 관한 다음의 권한		현행	
		가. 시장 등의 개설허가 및 변경 신고 수리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6조, 제10조	수정	
		나. 시장 등의 개설자에 대한 권고 및 조치명령	동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수정	
		다. 개업 등의 신고 수리	동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5조	현행	
		라. 개설자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동법 제12조, 제13조	현행	
		마.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동법 제14조	현행	
		바. 과징금 처분	동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0조, 제11조	현행	
		사. 청문	동법 제45조	현행	
		아.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동법 제43조제2항	현행	
		자.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51조	현행	
		2	○상품권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현행
		가. 상품권 발행등록	상품권법 제7조	수정	
		나. 상품권 발행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	동법 제8조제1항	신설	
		다. 상품권발행 폐지의 신고수리 등	동법 제9조	신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경제과		라. 발행보증금의 공탁명령 등	상품권법 제14조	분리
		마. 공탁물의 반환 승인	동법 제17조	분리
		바. 보증계약체결 신고의 수리	동법 제16조	신설
		사. 금융기관에 대한 권리실행 청구 신고의 수리	동법 제24조	신설
		아. 장부의 작성 보존 등	동법 제27조	신설
		자. 발행실적 등의 보고 처리	동법 제28조	수정
		차. 보고 및 검사	동법 제29조	분리
		카. 업무개선명령	동법 제30조	분리
		타. 등록의 취소 및 발행의 정지	동법 제31조	분리
		파. 청문	동법 제32조	신설
		하.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41조	신설
	3	○가격표시 명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조문 분리
	4	○노동조합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및 조사	노동조합법 제30조	수정
5	○노동조합의 설립·변경신고 및 해산신 고의 수리	동법 제13조, 제31 조	수정	
6	○노동조합에 관한 다음의 권한		현행	
	가. 규약의 변경, 보완명령 및 결의처 분의 시정명령	동법 제16조, 제21 조	현행	
	나. 임시총회 소집	동법 제26조제3항	현행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비 고
경 제 과	다. 단체협약 신고수리 및 변경·취소 명령	노동조합법 제34조 제2항 및 제3항	수 정
	라. 노동쟁의 신고 수리	노동쟁의조정법 제 16조	현 행
	마. 직장폐쇄 및 신고 수리	동법 제17조	현 행
	바. 노동쟁의 행위 신고	동법시행령 제8조	현 행
	사. 노동조합 총회 및 대의원대회 개 최 결과보고 (2개시군 이상에 걸친 노동조합 제외)	노동조합법시행령 제15조	현 행
	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한 위임 결 과 보고 (2개시군 이상에 걸친 노동조합 제외)	동법 제33조	현 행
	자. 노동조합의 지역적 구속력	동법 제38조	현 행
	차. 노동조합 총회 소집	동법시행령 제14조	현 행
	7 ○국내직업소개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현 행
	가.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등	직업안정법 제19조	수 정
	나. 직업소개업소의 지도 및 단속	동법시행규칙 제29 조	현 행
	다.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폐지 신고의 수리	동법 제35조	현 행
	라. 유료 직업소개사업의 허가취소 등	동법 제36조	수 정
	마. 직업소개소 폐쇄 등 조치	동법 제37조	현 행

분야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비 고
경 제 과		바. 직업소개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직업안정법 제40조	현 행
		사. 직업소개사업의 보고 및 검사	동법 제41조	현 행
		아. 유료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한 과태 료의 부과·징수	동법 제49조	현 행
공 업 과	1	○전기사업자의 타인토지 등 출입허가	전기사업법 제56조 제2항, 제5항	수 정
	2	○10만V 미만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규정 제출수리 및 변경 명령	전기사업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수 정 (개별항 목삭제)
	3	○10만V 미만으로서 전기수용설비 500 kW미만 및 발전용량 200kW미만의 자 가용 수용설비에 대한 다음의 권한		현 행
		가. 공사계획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동법 제32조제2항	수 정
		나. 공사계획 변경명령	전기사업법 제32조 제3항	현 행
		다. 확인 점검	동법 제41조제2항	현 행
		라. 보고명령 및 출입검사	동법 제63조	수 정
		마. 수리·개조·이전명령, 사용정지·제 한 명령	동법 제42조	수 정
	4	○용기·냉동기 또는 특정설비 제조(변 경) 허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현 행
	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 음 권한		현 행
		가. 가스용품제조사업(변경) 허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사업관리법 제3조	현 행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공업과		나. 시공자에 관한 시정명령 등	동법 제15조의4	현행
		다. 조정명령	동법 제34조	현행
	6	○도시가스시공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도시가스사업법 제54조 제4항	현행
	7	○에너지관리에 관한 다음 권한		현행
		가. 불합격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 조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5항	현행
		나.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면제	동법 제58조제6항	현행
		다.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및 필요한 조치명령	동법 제59조제4항, 제5항	수정
		라.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정지 명령	동법 제61조제1항, 제2항	현행
		마.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 제100조	현행
	8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한 다음의 권한		현행
	가. 확인점검	전기사업법 제41조 제3항	현행	
	나. 전기설비의 수리·개조·이전명령, 사용정지 및 사용제한 명령	전기사업법 제42조	수정	
9	○전기사업자의 타인의 토지공간 사용 허가	동법 제57조제2항	현행	
10	○전기사업자, 손실을 받은자의 재정신청의 처리	동법 제58조제2항	수정	

분야 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관 련 규 정	비 고
문화체육과	1	<p>○출판사 및 인쇄소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p> <p>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p> <p>나. 등록증 교부 및 정정 교부</p> <p>다. 폐업신고의 수리</p> <p>라. 등록취소</p> <p>마. 간행물 납본처리</p>	<p>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제3조</p> <p>동법 제3조제2항</p> <p>동법 제5조제1항</p> <p>동법 제5조의2</p> <p>동법 제4조제1항</p>	<p>현 행</p> <p>현 행</p> <p>수 정</p> <p>수 정</p> <p>현 행</p> <p>수 정</p>
	2	<p>○체육시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신고 체육시설업에 한함)</p> <p>가. 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p> <p>나. 신고필증 교부 및 재교부</p> <p>다.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신고 수리</p> <p>라. 휴·폐업 신고수리</p> <p>마.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p> <p>바.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p> <p>사. 등록취소 등 처분</p> <p>아. 체육시설 이용료의 조정에 관한 필요조치</p> <p>자. 자료제출 명령, 검사</p> <p>차. 과태료의 부과 징수</p>	<p>체육시설업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p> <p>동법시행규칙 제25조</p> <p>동법 제30조</p> <p>동법 제32조</p> <p>동법 제33조</p> <p>동법 제34조,</p> <p>동법 제35조</p> <p>동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3조</p> <p>동법 제39조</p> <p>동법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25조</p>	<p>현 행</p> <p>수 정</p> <p>현 행</p> <p>수 정</p> <p>현 행</p> <p>수 정</p> <p>수 정</p> <p>수 정</p> <p>수 정</p> <p>수 정</p> <p>현 행</p>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문화체육과		카. 시설업자의 청문	동법 제36조	현행
	3	○종교의식용 피아노(전자오르겐 포함)의 면세용도증명서 발급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동법시행령 제30조제2항제1의2호	현행
	4	○공연자 등록·관리에 관한 다음사항 가.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신청 수리 나. 등록증 교부 및 재교부 다. 폐업 등 신고수리 라. 등록취소	공연법 제3조 동법 제4조, 제5조 동법 제6조 동법 제6조의2	신설 신설 신설 신설
	관광과	1	○사업시행자가 아닌자에 대한 조성사업 시행허가	관관진흥법 제25제3항
	2	○관광지내 토석채취 등의 허가	동법 제36조제3호,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	현행
	3	○관광지등의 입장료, 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대상 시설 및 금액의 결정	동법 제35조제2항	수정
	4	○관광지조성계획의 고시	동법 제24조제3항	수정
	5	○국내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사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출입 검사	동법 제51조	수정
	6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변경승인) 신청	동법 제24조제1항	수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지역개발과	1	○국토이용계획 지형도면 승인에 관한 다음사무		조문 분리
		가. 국토이용계획으로 정하여진 용도 지역을 표시한 지형도면의 작성 제출	국토이용관리법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분리
		나. 승인된 지형도면의 고시 및 열람	동법 제12조제3항	분리
	2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한 토지 사용 권고	동법 제21조	현행
	3	○국토이용관리법(이법에 의하여 적용 또는 준용된 법령을 포함한다)에 의한 처분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동법 제26조	수정
	4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에 따른 의견 협의	도시계획법 제83조	현행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산업단지 지정권자인 도지사가 민간기업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의 다음사무		수정
		가. 지방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 승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제18조제1항	수정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동법 제18조제2항	신설
		다.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의 고시	동법 제19조의2	현행
	라. 개발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대한 협의	동법 제21조제2항	현행	
	마.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동법 제26조제3항	현행	
	바.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동법 제27조제2항	현행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지역개발과		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및 준공인가 처리를 위한 검사의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7조제2항	현행
		아.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동법 제37조제5항	현행
		자.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전 사용허가	동법 제37조제7항	현행
		차. 사업시행자의 감독조치, 의견진술 기회부여 및 처분고시	동법 제48조	현행
	6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 대한 조치 명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7조제2항	수정
	7	○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인가	동법 제47조제1항	현행
	8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인가	동법 제76조의2제2항	현행
	9	○택지개발사업 시행관련 분묘 등의 정리	택지개발촉진법 제15조	신설 규칙에서
	치수과	1	○지방·준용하천에 있어서 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양도 양수의 허가 및 신고수리	하천법시행령 제2조제1항
2		○지방·준용하천에 있어서 권리의무의 상속신고 수리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수정
3		○발기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수정
4		○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의 수리	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	수정
5		○지방·준용하천의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 및 유지명령	동법 제18조	수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치수과	6	○지방·준용하천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타 공작물의 공사 및 유지	하천법 제19조	수정	
	7	○지방·준용하천에 있어서 공사 원인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동법 제20조	수정	
	8	○지방·준용하천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등에 대한 공사 및 유지명령	동법 제22조	수정	
	9	○지방·준용하천에 대한 하천공사 및 유지허가	동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수정	
	10	○지방·준용하천 공사의 착수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합침	
	11	○지방·준용하천 구역안에서의 다음 각 호의 허가에 관한 사항			조문합침
		가. 유수의 점용	동법 제25조제1항 제1호	현행	
		나. 토지의 점용	동법 제25조제1항제 2호	현행	
		다. 하천부속물의 점용	동법 제25조제1항제 3호	현행	
		라.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	동법 제25조제1항제 4호	현행	
		마.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기타 토지의 형상변경	동법 제25조제1항제 5호	현행	
바. 토석·사력 기타 하천산출물 채취		동법 제25조제1항제 6호	현행		
사. 스케이트장 유선장의설치 기타 하천의 점용	동법 제25조제1항제 7호	현행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치수과		아. 식물의 재식	하천법 제25조제1항제8호	현행
		자. 하수를 이용하는 죽목의 유송 또는 선박의 운항	동법 제25조제1항제9호	현행
		차. 하천의 현저한 오손 또는 위생상 유해한 행위	동법 제25조제1항제10호	현행
	12	○지방·준용하천의 인접지역에서 수량에 영향을 미칠 지하의 유수채취 허가	동법 제25조제2항	수정
	13	○지방·준용하천의 점용허가 내용 등의 고시	동법 제25조제4항	수정
	14	○지방·준용하천에서 유수점용 수리권 조정	동법 제29조	수정
	15	○지방·준용하천에서 공작물의 신축, 개축공사의 준공검사	동법 제31조제1항	현행
	16	○지방·준용하천공사 준공검사전 사용 승인	동법 제31조제2항	현행
	17	○지방·준용하천에서 점용하천에 관한 공사의 대행	동법 제32조	현행
	18	○지방·준용하천에서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동법 제35조	현행
	19	○지방·준용하천에서 필요한 보고의 징구 및 검사	동법 제72조제1항	현행
	20	○지방·준용하천에서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및 의견청취 (단, 허가위임된 사항에 한함)	동법 제67조	조문합침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치수과	21	○지방·준용하천에서 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하천법 제68조제1항	수정	
	22	○지방·준용하천의 유지 및 직할하천의 경미한 보수	동법 제16조, 제22조	수정	
	23	○지방준용하천의 공사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자에 대한 공사비용의 부과·징수	동법 제58조	현행	
	24	○공유수면점용 및 허가기간연장 신청의 처리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14조	수정	
	25	○공유수면에서 다음 각호의 허가에 관한 사항			조문합침
		가. 공작물 등의 신축 등	동법 제4조제1항 제1호	현행	
		나. 접속토지의 수면이하로의 굴착	동법 제4조제1항 제2호	현행	
		다. 준설·굴착	동법 제4조제1항 제3호	현행	
		라. 인수·주수	동법 제4조제1항 제4호	현행	
		마. 토석·사력채취·식물재배·벌채	동법 제4조제1항 제5호	현행	
바. 수질오손 및 국민보건 유해행위		동법 제4조제1항 제6호	현행		
사. 토석·진개 등의 투기 등		동법 제4조제1항 제7호	수정		
아. 호안 등 시설물 및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	동법 제4조제1항 제8호, 제9호	현행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치수과	26	○공유수면 점용허가의 내용 고시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4조	수정
	27	○공유수면 점용 권리의무의 이전허가	동법시행령 제5조	수정
	28	○공유수면 점용 권리의무 상속신고 수리	동법시행령 제6조	수정
	29	○공유수면의 장애물제거 명령	동법 제10조	현행
	30	○공유수면 원상회복의무 면제 승인	동법 제11조제1항	현행
	31	○공유수면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및 그 내용 등의 공고 등	동법 제12조	합침
	32	○공유수면에서 공익을 위한 허가의 취소 등	동법 제13조	합침
	33	○공유수면에서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동법 제15조	수정
	34	○공유수면 점용자 등에 대한 조사 등	동법 제16조	수정
	35	○공유수면에 대한 처분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동법 제14조	현행
	36	○유선 및 도선의 요금, 운임의 승인	유선및도선업법 제34조	현행
	37	○하천편입 사유토지 동기말소 및 국로의 동기	하천법시행령제11조의2	수정
	38	○지방·준용하천내 공사실시계획 및 준공인가	하천법 제30조의2	현행
	39	○지방·준용하천 연안구역 내에서의 행위 허가	동법 제45조	현행
	40	○지방·준용하천 연안구역내 장애·위험 방지시설 설치 및 기타 조치명령	동법 제46조제2항	수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치수과	41	○하천 편입용지 등의 보상	하천법 제74조	수정
	42	○지방·준용하천에서 실효된 하천에 관한 효력회복의 조치	동법 제70조	수정
	43	○하천감시원의 임명 등	동법 제71조제1항	수정
	44	○보상금액의 산정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 제2조의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제9조	현행
	45	○보상금 지급 통지	동규정 제11조	현행
	46	○소유권 이전등기	동 규정 제13조제2항 및 제3호	현행
	47	○편입토지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 규정 제14조	수정
도로과	1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		조문합침
		가. 도로점용 허가	도로법 제40조제1항	현행
		나. 점용공사의 확인	동법 제40조제3항	수정
		다. 점용료의 징수	동법 제43조제1항	신설
	라. 원상회복의무의 면제승인	동법 제45조	현행	
	2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접도구역 안에서의 다음 각호의 허가 및 조치에 관한 권한		조문합침
가.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동법 제50조제5항	현행	
	나. 건축물,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 등의 허가	동법 제50조제5항	현행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도로과	3	<p>다. 죽목의 재식, 벌채의 허가</p> <p>라. 도로변 휴게소 설치허가</p>	<p>도로법 제50조제5항</p> <p>동법 제50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27조 제3항제4호</p>	현행
		<p>마.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p>	<p>동법 제50조제6항</p>	현행
		<p>○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점용 및 접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와 관련한 다음 각호의 권한</p>		조문합침
		<p>가. 권리의무의 양도허가, 신고의 수리</p>	<p>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p>	수정
		<p>나. 권리의무의 상속신고의 수리</p>	<p>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p>	현행
		<p>다. 발기인으로 부터의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p>	<p>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p>	현행
		<p>라. 합병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p>	<p>동법시행령 제5조제2항</p>	현행
		<p>4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사항</p>		조문합침
		<p>가. 타 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p>	<p>동법 제29조</p>	수정
		<p>나.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p>	<p>동법 제31조</p>	수정
		<p>다. 교량, 도선시설, 지하도, 터널, 샵도의 이용자에 대한 통행료 징수</p>	<p>동법 제35조제1항</p>	수정
		<p>라. 도로의 구조 보전과 운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차량운행 제한</p>	<p>동법 제54조제1항</p>	수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도로과		마.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징수	도로법 제67조제1항	현행
		바.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동법 제74조	수정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명령	동법 제75조	수정
		아. 도로에 관한 조사	동법 제76조의2	신설
		자. 통행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강제 징수	동법 제78조	현행
		차. 도로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매수 및 소유권이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수정
교통행정과	1	○자동차저당권에 관한 등록	자동차저당법 제4조	수정
	2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교부나 열람신청의 처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7조	신설
	3	○자동차신규등록 및 등록의 거부, 자동차 등록증의 교부(재교부 포함)	동법 제8조, 제9조, 제18조제2항	신설
	4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동법 제10조제2항	수정
	5	○변경등록의 처리	동법 제11조	신설
	6	○이전등록의 처리	동법 제12조	신설
	7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영치 및 폐기	동법 제13조	신설
	8	○수출이행여부의 신고 처리	동법 제13조제8항	신설
	9	○말소사실증명서의 교부	동법 제13조제9항	신설
	10	○압류등록의 처리	동법 제14조	신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교통행정과	11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자동차관리법 제16조	신설
	12	○등록사항 확인명령과 등록사항 확인표의 교부 및 부착명령	동법 제17조	신설
	13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	동법 제20조	수정
	14	○등록번호판 교부수수료 인가	동법 제76조제1항제4호	수정
	15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지정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동법 제21조	현행
	16	○자동차에 대한 개선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	동법 제24조	신설
	17	○자동차의 강제처리	동법 제26조	신설
	18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의 교부와 반납의 처리	동법 제27조	수정
	19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동법 제28조	신설
	20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동법 제34조	신설
	21	○점검·정비 또는 원상복구명령, 운행정지명령 및 임시검사 명령	동법 제37조	신설
	22	○정비관리자의 선임·해임신고의 처리 및 해임명령	동법 제38조	현행
	23	○차고시설 확보신고의 처리	동법 제39조	현행
	24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한다)의 처리 및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	동법 제48조	수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교통행정과	25	○자동차관리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다음사항		수정
		가. 이륜자동차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등	자동차관리법 제7조	신설
		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의 거부	동법 제9조	신설
		다.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의 처리	동법 제13조제7항	수정
		라. 이륜자동차 등록사항의 확인명령 과 등록사항 확인표의 교부 및 부 착명령	동법 제17조	신설
		마.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의 처리	동법 제18조	신설
		바.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지정	동법 제20조	신설
		사. 이륜자동차의 개선명령 및 운행정 지명령	동법 제24조	수정
		아. 이륜자동차의 강제처리	동법 제26조	신설
		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변경신고 및 폐지신고를 포함한다)에 관한 이 의 신청의 처리	동법 제34조	신설
차. 이륜자동차의 구조·장치변경승인 신청의 처리	동법 제34조	수정		
카. 이륜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명령 과 원상복구 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	동법 제37조	수정		
26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변경등록을 포 함한다)의 처리	동법 제53조	신설	
27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취소	동법 제54조	신설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교통행정과	28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및 휴업·폐업에 관한 신고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55조	수정
	29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명령	동법 제56조	신설
	30	○자동차관리법 제38조제3항에 의한 점검·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동법 제64조제2항	신설
	31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의 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동법 제66조	신설
	32	○보고명령 및 검사	동법 제72조	수정
	33	○단속	동법 제73조	신설
	34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동법 제74조	신설
	35	○청문(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함)	동법 제75조	수정
	36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동법 제84조	신설
	37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현행
		가. 건설기계 조종사 신고의 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현행
		나. 건설기계 조종사의 정기 적성검사 실시	동법 제29조	현행
		다.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 발급	동법 제26조	현행
		라.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증 재교부	동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77조	현행
	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대장 기재·비치	동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수정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교통행정과	38	바.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증 반납처리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80조	현행
		사.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처분	동법 제28조	현행
		○건설기계 등록의 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현행
		가. 건설기계 등록 및 등록증 교부	동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현행
		나. 건설기계 등록증 재교부	동법시행규칙 제5조	현행
		다.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처리	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현행
		라. 등록 이전신고 처리	동법시행령 제6조	현행
		마. 건설기계 소재지 변동신고 처리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현행
		바. 등록의 갱정 처리	동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8조	현행
		사. 건설기계등록 말소 및 확인서 교부	동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현행
아. 건설기계 등록원부의 비치관리 및 등초본의 교부와 열람신청의 처리	동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현행		
자. 등록번호표 봉인 등의 통지 및 명령	동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현행		

분야별	일련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교통행정과		차.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의 재부착	건설기계관리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현행
		카. 건설기계등록 번호표의 반납	동법 제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	현행
		타. 등록번호표의 새김명령	동법 제11조	수정
		파. 등록번호표 봉인자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수리	동법 제8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제16조	현행
	39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	동법 제16조, 동법시행규칙 제39조, 제40조	현행
	40	○소형 건설기계 조종 교육기관 지정	동법시행규칙 제17조	현행
	41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승인	동법 제17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	현행
	42	○건설기계의 사용정치처분, 화물운송의 금지	동법 제33조,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91조	현행
	43	○보고 및 검사	동법 제35조	현행
	44	○의견진술 기회 부여	동법 제36조	
45	○과태료 부과·징수, 이의신청 처리	동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94조	현행	
46	○건설기계 저당권 등록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수정	

(별 표 2)

분야별	일년 번호	사 무 명	관련 규정	비 고
총 무 과	1	○충청북도의회사구처직원중 지방5급이하 공무원의 의회내 전보권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현행

(별 표 3)

분야별	일년 번호	사무명	관련규정	비고
방호과	1	<p>○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관한 권한</p> <p>가.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변경허가 및 용도폐지</p> <p>나. 위험물제조소 등 완공검사 및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p> <p>다. 위험물제조소 등의 승계신고의 수리</p> <p>라. 예방규정의 인가, 변경인가, 변경명령</p> <p>마. 위험물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취소, 사용정지권</p>	<p>소방법 제16조제1항, 제3항</p> <p>동법 제17조제2항, 제3항</p> <p>동법 제19조</p> <p>동법 제22조</p> <p>동법 제25조</p>	<p>조문 합침</p> <p>수정</p> <p>신설</p> <p>수정</p> <p>수정</p> <p>수정</p>

(별 표 4)

## 민 간 위 탁 사 무

대상실과	일련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문화체육과	1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청소년관련법인	청소년기본법 제61조	현행
보건행정과	2	○나 이동진료사업 업무	대한나관리협회 충청북도지부	전염병예방법 제24조, 제48조	현행
사회복지과	3	○장애인재활에 관한 다음 사무  · 장애인 체육대회 ·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 장애인의날 기념 재활대회 · 재가장애인 상담지도 등	(사단법인) 한국 장애인재활협회 충북지부	장애인복지법 제44조, 제20조	현행
	4	○장애인 보장구 무료지원 사업	(사단법인)한국 장애인재활협회 충북지부	장애인복지법 제23조	현행
산림과	5	○수렵강습 운영에 관한 사무  · 수렵강습회 개최 · 수렵강습 이수증 교부	한국야생동물보 호협회 충청북도 지회, 대한수렵 협회 충청북도 지부	조수보호및수렵에 관한법률 제15조제 1. 제3항, 동법시행 규칙 제32조	수정

대상실과	일련번호	위탁대상사무명	위탁대상기관	근거 및 적용법규	비고
경제과	6	○지방기능경기대회에 관한 다음 사무  · 지방기능경기대회의 개최  · 지방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상금지급  · 지방기능경기대회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충북지방사무소	기능장려법 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22조, 동법시행령 제35조제3항	현행
기업지원과	7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사무	대한무역진흥공사 충북무역관	중소기업기본법 제14조	현행



[별표 5]

산업단지 관리권한 위임·위탁기관

일련 번호	단 지 별	위임·위탁 기관	근거 및 적용 법규
1	청주지방산업단지	청주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30조
2	충주1 지방산업단지	충주시장	"
3	현도지방산업단지	청원군수	"
4	부용지방산업단지	청원군수	"
5	단승산업단지	진천군수	"
6	대소산업단지	음성군수	"
7	소이산업단지	음성군수	"
8	대풍지방산업단지	음성군수	"